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1일, 안호영의원 등 22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11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호영의원)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

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 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이 지닌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국가가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며, 자연공원

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하고,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시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 제15조 및 제17조의3과 자연공원기본계획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자연공원에 대한 조사가 ‘자연자원’으로만 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공원자원 관리가 저해되고 있으며,

자연공원의 탄소흡수 및 기후조절, 홍수 및 산사태 완화, 관광 및 지역소비 등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그 가치에 대한 홍보가 법률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며, 공원 내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연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원’의 정의가 부재하므로 신설이 필요하고(안 제2조), 현재 관리 중인 체계 내에서 국립공원(국가), 도·군립공원(지자체)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 필요하며(안 제3조제3항),

자연공원의 동·식물 등 자연자원뿐 아니라 문화자원 및 자연·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전체 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안 제36조제1항)는 입장을 제출함.

또한,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의 효과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각 용도지구 유형별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용도지구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가 한정되어 지구 내 문화적 자원이 가진 가치의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사찰이 가진 문화경관의 가치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

의 ‘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사찰의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경관이 지닌 가치증진과 활용가능성 제고 및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43조제2호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전통사찰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 및 방재 시설설치로 규정되어 있고,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탐방로 정비·복원 등 국립공원 문화 경관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법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조문의 ‘환경개선’은 자연환경 뿐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 문화유산 등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경관 등 인문환경을 포함한 환경의 보전·관리 및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증진 행위 지원은 현행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법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